

방 송 통 신 위 원 회

심의 · 의결

안전번호 “별지와 같다.”

안 건 명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“별지와 같다.”

의결연월일 2013. 8.21.

주 문

-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도록 업무 처리의 절차를 개선하고 홈페이지에 약관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.

이 유

1. 일반현황

- 각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인터넷 접속, 회선설비 임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.
- '13년 5월말 각 피심인의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742천명이며, '12년말 전체 매출액 현황은 9,200억원을 나타내고 있다.

※ 관련자료 출처 : 사업자 제출자료

2. 사실조사 결과

- '10년부터 '13. 5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입시에 약정할인, 손해배상, 최저보장속도 등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설명서를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았으며, 홈페이지에도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<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 가입자 현황 >

단위 : 명

'10년	'11년	'12년	'13년 5월	계
172,374	169,635	177,754	122,891	642,654

※ 자료 출처 : 사업자 제출자료

3. 위법성 판단

- 피심인이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설명서를 고지 또는 교부하지 않은 행위, 홈페이지에 약관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행위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.

4.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권고

-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도록 업무처리의 절차를 개선하고 홈페이지에 약관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.

5.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계획서 제출

- 개선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6. 개선이행 결과의 제출

- 계획서상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개선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7. 결론

상기 피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.

2013. 8.21.

방 송 통 신 위 원 회	위 원 장	이 경 재 (인)
	부위원장	김 충 식 (인)
	위 원	홍 성 규 (인)
	위 원	김 대 희 (인)
	위 원	양 문 석 (인)

“별지”

- (1) 안전번호 제2013 - 30 - 091호 (사건번호 : 201305조사025)
피심인 : (주)씨제이헬로비전(대표이사 변동식)
피심인 주소 :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254 양천벤처타운
- (2) 안전번호 제2013 - 30 - 092호 (사건번호 : 201305조사026)
피심인 :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동구방송(대표이사 노성철)
피심인 주소 :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569
- (3) 안전번호 제2013 - 30 - 093호 (사건번호 : 201305조사027)
피심인 : (주)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(대표이사 노성철)
피심인 주소 :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569
- (4) 안전번호 제2013 - 30 - 094호 (사건번호 : 201305조사028)
피심인 : (주)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(대표이사 노성철)
피심인 주소 :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289
- (5) 안전번호 제2013 - 30 - 095호 (사건번호 : 201305조사029)
피심인 : (주)씨제이헬로비전아라방송(대표이사 조양관)
피심인 주소 :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3-9